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崔 公 鎬

(弘益大學校)

차 례

- | | |
|-------------------|------------------|
| I. 머리말 | 2) 祭儀用 工藝品 |
| II. 工藝 政策의 方向과 性格 | 3) 對中 進獻用 工藝品 |
| 1. 儀禮用 工藝品의 禮敎主義 | 2. 日常用 公예품의 節用主義 |
| 1) 朝儀用 工藝品 | III.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행사 등에서 사용되던 儀禮用 공예품들과 日常用 공예품들이 국가의 정책지표나 지배이념에 영향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특히 조선왕조는 태조에서 성종년간의 창업초기를 통해 체제의 정비와 왕권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百工은 王事に 이바지하는 것’이라 하여 공예를, 왕조의 통치이념 수행에 긴요한 매체로 크게 인식했을 뿐 아니라, 신분의 差序를 뚜렷히 세우고 民風士習을 순후하게 하여 敎化를 興起시키는 등 새로운 지배질서의 보급과 정착에도 공예분야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다.¹⁾

이에 따라 조선초기에는 왕실의 朝儀와 祭儀 및 중국에 보낼 進獻方物 등 각종 儀禮用 공예품과 일상용 공예품에 대해서 각기 뚜렷히 변별되는 제작 형식상의 지침을 국가에서 세우고 법제화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공예가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施政의 목표로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역할을 위해 조정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예의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예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²⁾ 개국초부터 국가주도의 공예품 제작시설을 갖추고, 공조 산하의 각종 공예관련 관청을 확대개편하여 업무의 소관별로 제작활동을 分掌케 하는 한편, 장인들은 기술의 전문성에 따라 職能을 세분하여 해당 관청별로 定額을 差定하고, 각 관청에는 관리를 首長으로 임명하여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제작과정을 監造토록 하였다.³⁾ 그리고 京工匠, 外工匠으로 크게 나

1) 『定宗實錄』, 定宗元年(1399) 5月 1日 및 『中宗實錄』, 中宗31年(1536) 1月 24日조. 金泰永, 「朝鮮初期 政治思想의 理念的 基礎」, 『韓國思想大系』Ⅲ, (성균관대 大東文化研究所, 1979) pp. 142~143 참조.

2) 조선초기의 시대적 특징에 대한 관점은 洪善杓, 「朝鮮初期 繪畫의 思想的 基盤」, 『韓國思想史大系』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1)이 참조되었다.

3) 관청수공업체제는 왕실과 중앙관아의 소용기물을 전담하는 京工匠과 지방관아에서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는 外工匠으로 나뉘며, 경공장에서는 129분야에 2,841명, 외공장에는 27분야에 3,656명 등 모두 6,497명의 官匠들이

뒤어 서울과 지방관청에서 각각 활동했던 장인들은 驗帖에 따라 工匠案에 등록시켜, 인력관리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으로써 공예활동의 중앙집권을 위한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부심했던 것이다.⁴⁾

여기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조선시대 공예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공예정책기조의 내용과 배경을, 그 기본틀이 형성되었던 조선초기를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공예정책에 대한 연구는 당시 정책결정의 핵심세력이었던 지배계층의 工藝觀은 물론, 공예형식의 창출 및 변화의 동인을 직접 제공했던 조형형식의 결정주체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진다.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예품 제작시설은 관리조직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공예정책의 범위 또한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태와 문양, 색채 및 재료의 선택 등에 이르기까지 제작의 전과정에 걸쳐 깊이 개입했었다.⁵⁾ 일상용 공예품에 대해서는 물론, 특히 왕실의 의례용 공예품의 제작시에는 圖說의 형식을 빌어 특별히 마련한 제작규범이 엄격하게 準用되었고, 제작의 결과가 이 기준에 어긋나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장인은 물론 監官에게도 엄중한 문책이 가해졌다.⁶⁾

더욱이 제작에 참여하는 장인들의 立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조세의무이행의 한 방편인 身役부담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역할도 제시된 제작기준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주체로서의 수동적 위치에 제한됨으로써 처음부터 창의력을 발휘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공예의 조형형식 및 기능이 공예정책 기조에 의해 그 기본틀이 형성되고 주도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예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 공예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공예정책 기조의 형성배경과 施政의 내용 등을, 당시의 통치이념이었던 유교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職能別로 각각 분속되어 제작활동을 전개하였다. 『經國大典』, 工典, 京工匠·外工匠條 참조.

4) 姜萬吉, 「朝鮮前期 工匠考」, 『史學研究』 12호, (韓國史學會, 1961) p. 34, 劉元東, 『韓國史論』 11, 國史編纂委員會, 1982, p. 48 참조.

5) 『中宗實錄』, 中宗 11年(1516) 11月 2日條, “尙衣院에 전교하기를, “평소에 초록·柳靑, 大紅비단을 잘 때에 반드시 무슨 무늬로 잘 것인지 아뢰어서 하는데, 이제는 아청색 紗羅도 또한 이 예대로 와서 아뢰도록 하라.”는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敎尙衣院曰, 常時如草綠柳靑大紅匹段織造時, 必稟用某紋織造, 今者紗羅雅靑, 亦依是例來稟.”

6) 『太祖實錄』, 太祖3年(1394) 1月 12日 및 같은 해 1月 15日 조 참조.

II. 工藝政策의 方向과 性格

조선초기의 공예정책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념적 성향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된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일정한 기술수준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제작형식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질높고 精細한 공예품을 범도에 맞게 제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시행에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禁制節目을 통해 고급공예품의 제작을 통제하고, 공예품의 사용에 있어서도 거칠고 敦朴한 것을 崇儉精神과 결부시켜 禮化와 風教를 도모하게 하는 요체로서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二元的인 施政의 방향은 매우 상반되고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정책적 지향목표를, 그것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공예품의 제작결과와 결부시켜 볼 때, 한 쪽은 精細한 것을, 다른 쪽은 그 반대인 질박한 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정책 지표를 형성하고 있는 이념적 근거를 상호해 보면, 결국 그것은 유교적 세계관 내에 통합되어지며 여기에 토대를 둔 ‘禮論’과 ‘生財論’의 구체적 실천방식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적인 공예정책 지표는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각기 그 적용대상을 달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① 왕실의 朝儀와 祭儀用的 禮器, 중국에 보내는 進獻方物 등 특수한 용도의 공예품에 대해서는 儀禮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질높은 공예품을 얻기 위해 엄격한 형식적 규범을 제정하고 그 기준을 준용케함으로써 정교하게 제작하려는 禮敎主義의 경향을 보이며, 그 이념적 근거를 ‘禮論’에 두고 있다.

② 일상용 공예품에 대한 정책은, 사치의 폐풍을 경계하고 民風士習의 교화를 도모하기 위해 질박한 것을 강조하는 節用主義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책적 이념은 崇儉精神을 내용으로 한 ‘生財論’에 토대를 두고 있다.

1. 儀禮用 공예품의 禮敎主義

‘禮論’은 유교의 여러 기본 이념들 중에서도 조선시대 통치질서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다. 명분과 질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禮論은 조선왕조의 정부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본틀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선초기에는 고려의 정치이념을 극복하고 새 왕조의 왕권의 명분과 통치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대적 과제와 결부되어 매우 긴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조선시대 정부 조직의 골격을 이루었던 六官體制와 그에 따라 設官分職한 품계 등 官級體係가 전통 禮論書인 《周禮》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⁷⁾

7)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一潮閣, 1991), pp. 200~205 참조.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시대의 禮制는 吉·凶·軍·賓·嘉禮의 五禮를 기본구조로 하여 운영되었는데, 이러한 五禮의 체계는 무엇보다도 격식과 상징 의미를 표징하는 각종 儀禮用 공예품을 통해 실질적으로 표출되었다. 태종 8년(1408) 5월에 있었던 태조의 국장시에 凶禮의 실무를 나누어 맡은 13色 가운데 공예관련분야가 服玩·祭器·儀仗·鋪陳을 비롯하여 1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각 色별로 判書·參判을 提調로 삼아 제작활동을 監造했던 것은 禮制의 구현매체로서의 공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⁸⁾

禮制의 五禮의 체계가 고려의 정치이념이 해체되고 새 왕조의 성립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왕권을 수식하고 명분을 줄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질서개념이었다면, 儀禮用 공예품은 禮制에 토대를 두고 정치질서와 왕권의 명분을 표식하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따라서 儀禮에 필요한 각종 공예품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⁹⁾

이를 위해서 국초부터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었는데 儀禮用 공예품은 각각의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시 朝儀와 祭儀, 그리고 對中 進獻用으로 그 종류가 나뉘어진다.

이들 儀禮用 공예품에는 품질의 精粗基準이 명시된 《大明律》의 ‘器用布絹不如法’ 등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精細한 품질 및 격식을 정한 제작기준과, 禮度의 前例를 충실히 따르려는 보수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기능별로 제작형식상의 개별적 특징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¹⁰⁾

1) 朝儀用 공예품

朝儀는 국가의 각종행사와 공식적인 儀禮절차를 말한다. 여기에 쓰이는 일체의 공예품인 朝儀用品은 기능의 성격상 왕실의 정치적 명분 및 권위를 수식하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정책적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정책적 비중은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조선초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태조때 설치한 어용기물의 전담관청인 尙衣院 提調는 “人臣의 極位인 1品官으로 할 것”을 관례화하였으며, 역대왕 가운데서 검소하기로 이름 높았던 成宗도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尙衣院의 別좌와 匠人 數를 常貢하는 물량이 많음을 들어 대폭 늘리도록 했던 사실 등은 朝儀用品의 중요성에 대한 지배계층의 공통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또한 1394년 한

8) 『太宗實錄』, 太宗 8年(1408) 5月 壬申조.

9) 李範稷, 앞책, p. 51 참조.

10) 『大明律直解』(景仁文化社 영인본, 1974), 「器用布絹不如法」조에는 “무릇 사용하는 器物을 제작하면서 견고하고 진실하게 하지 못하거나, 絹布 등속을 엮고, 짚고 좁게 하여 파는 자는 각각 笞50에 처하고, 물건은 몰수한다”고 하고 있다. 中宗10년에는, 麗布를 제조한 자를 制書를 어긴 律로써 論斷할 것을 啓請하고 있다. 『中宗實錄』, 中宗10년 6월4일 및 同15년 윤8월18일조 등 참조. “司諫院 大司諫 尹殷輔等, 上劄曰, 頃者漢城府, 啓請濫造惡米者, 杖一百徒三年, 切隣座主及行用人, 并杖八十, 用麗惡綿布者, 以制書有違律論斷”

11) 『中宗實錄』, 中宗4년(1509) 2월4일조, 『成宗實錄』, 成宗13년(1482) 1월21일 및 同13년 1월22일조 참조. “上曰別進獻雜物多數 故不得已加設”

성천도를 위해 새로 축조한 도성의 일부가 기울어지려 하자 監役官은 襄津의 수자리에 귀양보내고, 승려신분이었던 石匠은 효수하여 그 머리를 襄城 위에 매달아 후일의 경계로 삼았던 일도 조의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¹²⁾

지배계층의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朝儀用 공예품에는 精細한 품질기준, 형식의 정형화, 엄격성에 못지 않게 品階 및 신분의 差序에 따른 享受範圍의 제한과 差別化에 무엇보다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개국초기에 행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마련한 服飾 器皿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관복제도는 太祖 원년 12월에 처음 실시하였고,¹³⁾ 太宗 16년(1416)에 예조참의 許稠가 올린 〈服制式〉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였다.¹⁴⁾ 端宗 2년(1454)에는 조정의 文彩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胸背制度가 처음 도입되었으며,¹⁵⁾ 그밖에 금은기, 청화백자, 칠기 등 기명과 각종 장신구에 이르는 거의 모든 朝儀用品에 대해서 형식과 색채, 문양에까지 法典이나 法令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이상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朝儀用 공예품의 정책적 핵심은 무엇보다도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려는 품질 및 형식기준에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복과 흉배는 물론 車輿와 각종 기명들에 적용된 수요의 차별적 기준은 매우 엄격해서 특정 공예품이나 문양, 색채가 곧 신분과 품계를 상징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¹⁷⁾ 여기에 대해서는 太宗 원년(1401)에 門下府 郎舍가 올린 상소문 내용에서 명백하게 시사되고 있다.

즉, “요사이는 늙은 의원, 늙은 점장이, 심지어는 獸醫의 무리들까지 모두 檢校로서 資憲, 嘉靖, 嘉善의 직급을 받아 옥자끈, 金帶가 宰相과 혼동하여 거리의 아이들과 閭巷의 부녀자들까지 이를 가리켜 무시하고 웃사오니, 다만 名器를 어지럽히고 朝廷을 낮출 뿐 아니라 天祿의 허비 또한 생

12) 『太祖實錄』, 太祖3년(1394) 1월12일 및 同3년 1월15일조. 또한 『成宗實錄』, 成宗10년(1479) 12월6일에는 朝儀用品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해당 匠人과 監官에게 동시에 엄중한 문책이 가해졌다.

13) 『太祖實錄』, 太祖元年(1392) 12월12일조 참조. “都評議使司에서 明年 元正때부터 비로소 조정에서 제정한 冠履을 입게하고, 禮曹로 하여금 詳審하게 하여 定하게 하니 禮曹에서 보고하기를, 1품은 紅袍·犀帶·黑色靴, 2품에서 判閣門 이상은 紅袍, 荔枝金帶·黑色靴, 3품과 4품은 靑袍·黑角革帶, 象笏·黑色靴, 5품·6품은 靑袍·黑角革帶·木笏·黑色靴, 7품이하는 綠袍·黑角革帶·木笏·黑色靴로 定한다.”

14) 『太宗實錄』, 太宗16년(1416) 1월丙午조. 태조원년에 제정한 관복제도를 洪武禮制에 따라 다시 정비하였다. 그 뒤 문무관의 朝服 색깔과 형식을 여러차례에 걸쳐 조정하면서도, 중국관복제도의 수용은 우리 풍토에 맞지 않는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주체적인 衣冠制度의 정착과정을 엿보게 한다. 『中宗實錄』, 中宗29년 11월25일조 참조.

15) 『端宗實錄』, 端宗2년(1454) 12월10일조. 의정부의 품의에 의해 문무당상관의 흉배를 제정하였다. 大君은 麒麟, 都統使는 獅子, 諸君은 白澤, 文官1품은 孔雀, 2품은 雲鴈, 3품은 白鸞, 武官1·2품은 虎豹, 3품은 熊豹, 大司憲은 獬豸.

16) 형식과 색채·문양 등의 규범은 개국초기인 太祖年間부터 제정하였으며 『五禮儀』 등에는 儀禮詳定所에서 규정한 여러 제작기준들이 圖說형식으로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또한 『經國大典』을 비롯한 각종 법전들에는 품계에 따른 공예품의 사용 제한규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단에 넣을 문양까지 사전에 왕의 친필을 거쳐 제작하기도 했다. 『中宗實錄』 中宗11년 11월2일조 참조.

17) 『端宗實錄』, 端宗2년(1454) 5월30일조. 예조에서 “大小人員과 工商·賤隸의 복식을 모두 等差 있게 제정하고, 여기는 자를 禁하도록” 주청하니 이를 시행토록 하였다.

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했던 것이다.¹⁸⁾

朝儀用品의 격식과 차별화는 成宗이 스스로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조정의 文彩와 名器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했듯이, 왕권의 명분과 통치질서를 확고히 수립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¹⁹⁾

이러한 지배계층의 의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朝儀用品의 불법 사용 사례를 두고,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풍습이 僭濫해지는 것은 상하의 등급이 분명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며, 신하로서 임금의 거동을 모방하고 私家에서 왕실의 예를 모방한다면 마침내 상하가 전도되어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여 신분의 差序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기강이나 존망의 문제와 관련시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²⁰⁾

결과적으로 신분의 差序는 禮制 가운데 공예품의 차등을 圖式으로 규정한 嘉禮의 序禮부분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 대로, 공예품의 질과 형식의 차별화를 통한 階層의 분명한 변별을 통치질서의 수립과 教化를 이루는 관건으로 삼았던 禮敎主義의 공예정책의 기본이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같은 朝儀用品에 대한 施政의 방향에 위배되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령된 각종 禁制節目을 통해 엄중하게 통제했던 것이다.

2) 祭儀用 공예품

祭儀用 공예품, 즉 祭器의 경우에는 같은 儀禮用 공예품들 가운데서도 형식적 보수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조선시대에는 祭禮 형식을 각종 의례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여겼기때문에 祭禮의 운영에 정성과 공경을 다 했을 뿐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앞 시기까지 敬承된 祖宗成憲의 古儀를 엄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었다.²¹⁾

따라서 변화를 오히려 非禮로 여기는 朝儀 자체의 특수한 보수적 속성에 영향을 받아, 제기의 제작에 있어서도 창의성 보다는 古儀를 準用하는 默守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기형태의 양식적인 변화가 매우 더딘 것은 이러한 인식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²²⁾

이와같은 제기에 대한 보수적인 施政의 방향은 세종때 착수하여 성종 5년(1474년)에 완성한

18) 『太宗實錄』, 太宗元年(1401) 5월1일조.

19) 『成宗實錄』, 成宗16년(1485) 윤4월19일조 참조. “傳曰, 冑背果非觀美之事, 是乃朝中貌彩, 承旨等, 雖未參宰樞之列其各備着”

20) 『明宗實錄』, 明宗11년(1556) 11월20일조. 이러한 간원의 지적은 공예품 사용의 차별화에 朝儀形式의 규범적 핵심이 두어졌음을 알게 한다. 즉, “부원군의 아들 혼사에 사용된 공예품의 격식이 왕자·공주의 혼례와 다름이 없어 사람들이 ‘참람히 원자와 겨룬다’고 하여 물정을 해괴하게 여긴다”고 했던 것이다. 이 때에 사용된 장막과 鋪陳 등 설비는 私家에서 사용할 수 없는 典設司와 豐儲倉, 長興庫 등 관청에서 맡았었다.

21) 『成宗實錄』, 成宗22년(1491) 1월8일조 참조. “傳曰, 改造銀爵, 雖曰功重, 然今當一新制作之時, 知其不合禮文, 而仍舊可”

22) 祭器의 제작에 주로 인용된 經書는 宋 陳祥道의 『禮書』, 宋 陳元靖의 『事林廣記』, 朱子の 『釋尊儀』와 『周禮圖』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李範稷, 앞책, p. 202 참조.

《國朝五禮儀序禮》 등 禮論書를 통해서도 시사되고 있다.²³⁾ 잘 알려져 있듯이 이들 禮論書에는 제기와 朝儀用品을 포함하여 五禮에 필요한 각종 공예품의 형식을 도면을 곁들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실제 제작시에 典範으로 삼으려는 배려에서 찬술하였는데, 이 가운데 특히 제기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도 제의용품의 규범적 엄격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²⁴⁾

그리고 세종 30년(1448)에 禮器와 大小駕儀杖을 古儀에 준하여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 護軍의 벼슬에 올라있던 安堅으로 하여금 法度를 그리게 하고 책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제작에 참고하도록 했던 사실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주목을 끈다.²⁵⁾ 또한 왕이 완성된 제기를 일일이 親覽했던 일과 ‘造禮器尺’이라 하여 제기의 제작시에만 쓸 기준척도를 별도로 제정하여 썼던 일도 제기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²⁶⁾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세종 19년(1437)에 僉知中樞院事 朴연이 그동안 써왔던 瓚과 纒 등의 제기 형식이 《周禮》에 비추어 어긋남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여 《五禮儀》 찬술 전에도 《周禮》 등 예문을 상고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성종때는 祭器鑄成都監의 提調였던 盧思愼 등이 鑄爵과 銀爵의 형식을 禮文에 따라 고쳐 만들도록 계를 올린 바 있다.²⁷⁾ 그 밖에도 〈禮文〉을 상고하여 기존에 쓰고있던 제기형식을 改造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특히 칫수가 약간 다르지만 형식이 바른 것은 改造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문과 다른 제기를 계속 쓸 수 없다 하여 다시 만들도록 했던 일은, 《五禮儀》와 《禮記》의 제작기준이 서로 상충될 때 《禮記》를 우선으로 삼았던 사실과 함께 제의용품의 형식적 보수성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²⁸⁾

실물자료를 통해 본다면, 현재 宗廟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제기의 대부분이 수차에 걸쳐 改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의 《五禮儀》상의 圖像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 고대 靑銅器의 형태에 기준을 둔 尊 爵 등 몇몇 祭器의 경우에는 1900년대 초에 활동한 李王職美術品製作所에서도 거의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²⁹⁾

또한 세종 원년에 이미 그 타당성이 검토되었지만 허용되지 않았던 白磁祭器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성종 25년(1494)에 금속제 제기 보관창고가 소실된 뒤 비축한 銅이 부족하고, 단시일 내에 鑄造 할 수도 없던 부득이한 여건에서 대체되었으나 그 뒤 다시 鑄器 등 금속제로 환원된 사실에서도 제기의 형식적 엄격성은 거듭 확인된다.³⁰⁾

23) 『世宗實錄地理志』, 『國朝五禮儀』, 「序禮」中の「冠冕圖」, 「祭器圖說」, 「饌實圖」, 「樂器圖說」 등 참조.

24) 『國朝五禮儀』 및 『成宗實錄』, 成宗23년(1492) 4월21일조 참조.

25) 『世宗實錄』, 世宗30년(1448) 3월 庚寅조 및 李範稷, 앞책, p. 302 참조.

26) 『成宗實錄』, 成宗22년(1492) 1월24일조. “右議政盧思愼等書啓, 新造祭器 且請入內, 親覽”. 造禮器尺은 營繕에 쓰인 營造尺, 布帛을 재는 布帛尺 등과 더불어 제기 제작에만 썼던 특징적인 자였다. 그 길이를 당시 m 원기의 구실을 한 黃鐘尺에 견주어 산출해 보면, 28.64cm이다(朴興秀, 「李朝 尺度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제4집, 1967, p. 215 참조)

27) 『世宗實錄』, 世宗19년(1437) 1월28일 및 『成宗實錄』, 成宗12년(1482) 1월11일, 同21년(1490) 11월22일조 참조.

28) 『成宗實錄』, 成宗22년(1491) 1월8일조.

29) 崔公鎬, 「李王職美術品製作所 研究」, 『古文化』, 제34집,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8, pp. 97~123 참조.

3) 對中 進獻用 공예품

중국에 보내는 進獻方物은 당시 국제무역의 유일한 통로로서의 실리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명분 상으로는 事大의 禮에 따라 職貢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뜻에서 정성과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 엄격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었으며, 정교하거나 거친 품질의 精粗 기준도 그만큼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³¹⁾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세종 6년(1424)에 예조에서 계를 올리기를, “대행 황제를 위하여 향을 올리는 祭文은 길고 넓은 厚白紙에 쓰고, 表箋을 봉해 싸는 예에 따라 金으로 그린 누런 빛깔의 表筒과 金으로 그린 누런 梢緞겹보를 쓸 것을 건의 하였으며³²⁾, 성종 11년(1480)에는 사신을 통해서 중국 황제에게 象牙로 雜像을 만들어 바친 監官(尙衣院 主簿) 郭致禧를 한 계급 특진의 특혜를 베푸는 바 있었다.³³⁾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 보낸 명주와 초피의 질이 거칠다하여 상의원 提調와 호조 당상, 낭청을 推告하고 尙衣院과 司瞻寺의 色官員에 대해서는 먼저 파면한 뒤에 추고하도록 엄명을 내린 바 있으며³⁴⁾, 세조 때에도 중국으로부터 謝恩文書를 봉하여 싸는 천의 질이 거칠고 나쁘다는 평을 듣자 왕이 크게 노하여 長興庫, 繕工監 등 관할관청의 관리들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기도 하였다.³⁵⁾

이와같은 사례들은 敬謹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신숙주의 지적도 있었지만, 중국에 보낸 진헌품은 성의를 다하여 만든 고급품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 되어 있었음을 알게 한다.³⁶⁾

특히 세종 13년(1431)의 기록은 진헌품에 대한 정책 지도계층의 입장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임금이 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節日을 賀禮하는 表文을 拜送하였는데, 聖節使가 떠난 한참 뒤에 공조에서 올린 見樣을 보고 表箋筒에 그린 용문양의 어금니가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세종이 즉시 畫員 楊斐를 뒤쫓아 보내 그려 넣도록 한 일이 있었다.” 실제로 그 표전통과 그것을 썼던 비단 보자기에 그려진 것을 확인해 보니 6마리의 용이 모두 어금니가 빠져 있었다고 한다.³⁷⁾ 이 일로 인하여 공조 좌랑 元志於와 화원 양비는 국문을 당하였고, 특히 화원에게는 苔刑

30) 『成宗實錄』, 成宗25년(1494) 3월22일조. “禮曹判書 成倪來啓曰, 集慶殿火災致祭例考古禮無之近日 恭陵雷震遣大臣祭之請依此例致祭但祭器 祭服盡燒當改之若待改造, 而祭則恐遲緩古語有之潢潦之賤可以薦神明姑以時服與沙器祭之何如”

31) 『世宗實錄』, 世宗7년(1425) 2월15일조에는 칙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신의 사사로운 요청에도 白磁瘡本과 종이 등을 각별히 精細하게 제작하여 진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32) 『世宗實錄』, 世宗6년(1424) 9월4일조 참조.

33) 『成宗實錄』, 成宗11년(1480) 8월5일조 참조.

34) 『明宗實錄』, 明宗13년(1558) 3월3일조 참조.

35) 『世祖實錄』, 世祖10년(1464) 5월25일조 및 『典錄通考』, 工典 雜令條(法制處, 1974), p. 566 참조.

36) 더욱이 성종년간에는 明(憲宗)이 太監을 派遣하여 對中進獻品の 질이 떨어지므로 ‘온갖 것을 극히 精一하게 하라’고 지적한 일도 있었다.

37) 『世宗實錄』, 世宗13년(1431) 11월16일조 참조.

20대가 가해졌다. 그 뒤 이 사건은 중국에 진헌품을 보낼 때 늘 하나의 교훈으로 膾炙되면서 제작 시의 경계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³⁸⁾

이 자료는 진헌용 공예품에 대한 禮敎主義的 경향과 함께 제기나 朝儀用 공예품 뿐 아니라 表箋筒 등 對中 진헌품 가운데 핵심적인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그 형태와 문양 등을 상세히 그린 見樣, 즉 제작도면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된다.³⁹⁾

儀禮用 공예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또하나 주목되는 현상은, 부분적이거나 중국과 일본의 앞선 공예기술을 移傳하여 공예품의 질을 높이려는 기술 개량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일상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절용주의적 입장을 보여왔던 성종이, 그로 인하여 공예기술이 낙후될 것을 우려하여 事大用과 朝儀用 등 儀禮用 공예품을 위해서는 精細한 기술의 전승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⁴⁰⁾ 성종 9년(1478)에는, 사용법이 미숙해서 어렵게 수입한 回回靑의 불필요한 소모가 많다고 하여 燕行使 일행에 畫員을 별도로 동행시켜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 오도록 조치 하였다.⁴¹⁾ 심지어는 交隣의 대상으로서 貶下하던 일본에 대해서도 刀子 제조기술과 造船技術이 앞섰음을 인정하고 倭船의 장점을 직접 비교 연구하게 하는 한편, 日人 刀子匠 豆老可文을 불러 시험 제작토록 한 뒤, 그 보상으로 외국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해온 일반 관례를 따를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⁴²⁾ 특히 倭船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 우리나라의 漕船, 濟州船과 함께 강물에 띄워 오르내리도록 했는데, 왜선이 가장 앞섰다는 것이다.⁴³⁾ 그 이유는 왜선의 바다판재가 우리 것보다 얇았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개량의 의지가 일상용을 포함한 공예 전분야에 고루 미쳐져 조선시대 공예발전의 원동력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 의례용 등 특수한 용도의 공예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관심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38) 『世宗實錄』, 世宗21년(1439) 6월19일조 등 참조.

39) 이 자료 뿐 아니라 기타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제작도면의 존재는 거듭 확인된다. 『成宗實錄』, 成宗23년(1492) 4월21일조 등 참조.

40) 『成宗實錄』, 成宗3년(1472) 9월23일조에는 事大를 위한 고급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1) 『成宗實錄』, 成宗9년(1478) 8월11일조. 그리고 『世祖實錄』, 世祖 7년(1461) 5월28일에는 “綾羅匠은 기술자가 상당히 많으나 고치를 커서 실을 뽑고 染色하는 등의 일은 모두 중국물건만 같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는 재능 있는 자를 선택해서 중국에 使行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씩 輪番으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기술을 배워오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밖에 『成宗實錄』 成宗6년(1475) 1월19일조에는 紙匠 朴非가 일찌기 謝恩使를 따라 북경에 가서 造紙法을 배워왔음을 회고하고 그 제조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42) 『明宗實錄』, 明宗21년(1566) 3월13일조에는, 日人에게 吹鍊기술을 배우기 위해 倭館에 찾아가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득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成宗實錄』, 成宗13년(1482) 9월24일조에는 日人 刀子匠에 대한 官職 제수문제를 일단 제작과정을 지켜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유보하였다.

43) 『成宗實錄』, 成宗22년(1491) 4월11일조. 왜선의 실험결과에 관심을 갖게된 조정에서 그 체제를 모방하여 다시 실험하기로 결정하였다. “領事洪應啓曰, 臣巡到諸浦今蒿工試今新造倭船濟州船漕船, 一時發之, 順流而下則, 倭船最疾濟州船次之漕船, 最遲逆流而, 上亦然, 此無他倭船板薄便疾故也, 然倭船則中板曲故內面廣, 今造倭船則中板不然, 故內狹, 請更倭船體制, 加造試之”

2. 日常用 공예품의 節用主義

일상용 공예품에 대해서는 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실생활의 風敎를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는 인식으로, 儀禮用 공예품에 못지않은 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었다.

일상용 공예품에 대한 정책기조는 ‘德은 본이요, 財는 末’로 보는 유교의 本末論과, 도덕적 실천에 대하여 경제적 실천은 가치의 차원에서 末端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 경제활동을 소인배의 행동으로 貶下하면서, 생산보다는 소비의 節用에 중점을 둔 ‘生財論’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다.⁴⁴⁾

儒家에서의 ‘生財論’은 도덕적 가치이념과 실천론의 틀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실천형식의 핵심인 ‘節用’의 개념은 주자학에서 뿐 아니라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라는 《論語》學而編의 내용에서부터 그 근거가 찾아진다.⁴⁵⁾ 이 내용은 공자가 治國의 要道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자는 나라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절용’ 즉, 나라의 비용을 절도있게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⁴⁶⁾ 조선초기의 정책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이른바 朝鮮朱子學이 본래의 주자학 보다 오히려 도학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바탕을 두로 수립된 일상용 공예품에 대한 절용주의적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초기의 범진인 鄭道傳의 《經濟文鑑》別集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賢君의 조건으로 ‘부역을 감하고 형벌을 더는 것과 함께 스스로 減膳하고 조정에 바치는 물건을 막으며 무늬있는 포목의 사용을 금할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은 절용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로서 주목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崇儉精神 고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공예품의 제작과 사용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장식과 금은, 비단 등 고급재료의 사용을 弊風이라 하여 억제하는 대신, 거칠고 敦朴한 것을 미덕으로 보아 그 이념의 실천에 상하귀천의 차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⁴⁷⁾

그 대표적인 예는 개국초기인 太祖 7년(1394)에 궁궐의 영선을 맡은 金師幸과 金湊가 극도로 정교하기만을 힘써서 백성의 힘을 괴롭게 했다는 이유로 효수당했던 일을 들 수 있다.⁴⁸⁾ 그후에도 궁궐의 크고작은 영선이 있을때마다 신하들은 “堯 임금이 띠집에 거처했다”는 옛고사를 인용

44) 『大學』, “德者本也 財者末也”, 朴忠錫, 「儒敎의 生財論:그 原型과 變容」, 『정신문화연구』, 13권4호, 1990, pp. 35~46 참조.

45) 『論語』, 學而編.

46) 이러한 生財論의 기본이념은 유형원, 星湖 李漢 등으로 이론적 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형원의 生財論은 朝鮮朱子學의 道學의인 사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명백히 퇴색되고 있던 당시의 생재론을, 원시 유교 본래의 생재론적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사상적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朴忠錫, 앞논문, p. 42 참조.

47) 『睿宗實錄』, 睿宗즉위년(1468) 9월22일 前王인 世祖의 喪을 당하고도 綵緞 무역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도리와 禮儀를 名分으로 禁할 것을 주청한 바 있다. 여기에는 채색하여 화려한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中宗實錄』, 中宗28년(1533) 11월4일조는 짚은 쪽물의 염색풍조를 폐풍으로 단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48) 『太祖實錄』, 太祖7년(1394).

하여 감소할 것을 끊임없이 주청하고 있다. 그밖에도 조선초기의 조정에서, ‘그 災害가 天災보다 심하다’는 사치근절을 위한 논의가 1년에 수차례씩 거론되면서 반복해서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靑華白磁, 朱漆器의 사용금지, 사대부 및 서민용 綿布의 升數를, 앞 시기보다 현저하게 감하였던 세조 3년의 기록, 성종년간에 毛羅와 膠草 등 고급재료를 쓰고 금은 주옥으로 치장한 갖은 사용자와 제작자를 함께 추국했던 일들을 들 수 있다.⁴⁹⁾ 특히 사치를 금지하는 禁奢令이 성종년간에 집중되었던 것은 성미학 이념이 심화된 시점과 무관하지 않으며, 조선왕조의 창업당시에 비해 해이된 통치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또한 儉俗은 ‘바람에 풀이 눅듯’ 왕실에서 솔선하여 실행해야 백성들의 教化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尙衣院에서 진상하는 衣帶의 질을 크게 낮추어 들이도록 지시했던 세조의 조치는, 중종이 해진 絳紗袍를 크게 꿰매어 입음으로써 스스로 검절의 垂範을 보였던 사실과 함께 일상용 공예품에 대한 節用主義的 정책의지를 이해하는 데 적지않은 도움을 준다.⁵⁰⁾

일상용 공예품에 적용되었던 이러한 節用主義的 정책지표는, 특수한 사용목적에 국한된 儀禮用 공예품에 비해 범계층적인 폭넓은 파급효과를 지녔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공예활동 전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상용 공예에 대한 정책이념의 핵심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활동보다는 절제된 소비생활에 중점이 두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공예형식의 다양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술의 퇴조와 공예품의 粗質化현상을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生財論’에 토대를 둔 節用主義的 공예정책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더욱이 신분의 계서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예품 제작을 담당했던 匠人階層을 工商賤隸라 하여 노비와 同類로서 賤業視 했을 뿐 아니라 정교한 기술을 발휘하는 일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공예 정책지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朴齊家, 洪大用을 비롯한 북학과 실학자들, 특히 중상주의적 입장을 보였던 利用厚生學派 계열의 실학자들에 의해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⁵¹⁾

49) 『明宗實錄』, 明宗4년(149) 3월13일, 『中宗實錄』, 中宗11년 11월8일의 紗羅綾緞, 靑華白磁, 朱漆器 禁止, 『世祖實錄』, 世祖3년(1457) 2월11일조에는 종전의 12升을 9升과 8升으로 각각 낮추어 조정하고 있다. 『中宗實錄』, 中宗11년(1516) 5월21일조 등 참조.

50) 教化의 興起를 바람과 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王의 솔선수범을 촉구하고 있다. 『明宗實錄』, 明宗19년(1564) 2월10일조 참조. 『世祖實錄』, 世祖3년(1457) 2월11일조 및 『中宗實錄』, 中宗20년(1524) 2월4일조.

51) 朴齊家, 『北學議』, 外篇 財賦論, 朴趾源, 「熱河日記」, 『燕巖集』 卷11, “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正其德矣”,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3, 「與人書 二首」; 柳壽垣, 『迂書』 1, 論高麗制, 科目條 등 참조. 박제가는 우리의 낙후된 공예기술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재능있는 사람을 10명씩 뽑아 사신행차에 동행하여 배워오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제가는 여기에 앞서 같은 책 內篇, 市井에서, “夫財, 譬則井也, 汲則滿, 廢則竭, 故不服錦繡, 而國無綺錦之人, 則女紅衰矣, 不嫌窳器, 不事機巧, 而國無工匠陶冶之事, 則技藝亡矣”라 하여 공예의 쇠퇴가 고급기술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연유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財物과 공예기술의 발전을 우물의 이치에 비유하여 설명한 바 있다. 박지원과 홍대용, 유수원도 박제가와 유사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Ⅲ. 맺음 말

이상과 같이 이원적인 구조로 전개된 조선초기의 공예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좀더 진전시킨다면, 각 시기의 공예형식은 물론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고려와 조선시대 공예의 형식적 특징 등을 공예정책의 이념과 내용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상용 공예품에 폭넓게 적용되었던 절용주의적 정책경향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른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보아온 한국미술의 특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방법적 모색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의 이 발표에서는 조선초기의 각 정책의 지표가 공예품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조선초기의 이러한 정책기조가 중·후·말기로 이어지면서 어떤 특징과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다루어 보려 한다.